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오세희 · 허성무
서왕진 · 정진욱 · 이언주
장철민 · 박지혜 · 이재관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,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,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 ·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 ·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

항).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”을 “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본재산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<u>1천분의 3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	<p>제7조(기본재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1천분의 2 이상</u> <u>1천분의 3 이하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